

연구 자료

미국의 2002 농업법

최 정 섭* 권 오 복** 다니엘 A. 섬너***

주제어: 미국 농업법, 직접 지불, 시장보전직불제

Abstract

In the United States, the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 (2002 Farm Bill) has been signed into law on May 13, 2002. The law has 10 titles. The 2002 Farm Bill covers from 2002 to 2007. Some features of the bill include various direct payment programs to farmers, maintaining the marketing loan program, and a new dairy support program. This research material summarizes the features of 2002 Farm Bill in comparison with the 1996 Farm Bill features. Since the directions of the U.S. agricultural policy has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n Korean agriculture, we have great interest in the changes of American farm policy.

1. 2002 농업법 입법 과정
2. 미국 농업법의 역사적 전개
3. 1996 농업법과 농정의 선회

4. 2002 농업법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
 5. 2002 농업법의 함축성
- 부록: 1996 농업법과 2002 농업법의 주요내용 대비

1. 2002 농업법 입법 과정

2000년 농촌순회 공청회를 시발로 공식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2002 농업법 입법은 2002년 5월 13일 부시대통령이 서명함으로

써 완료되었다. 2001년 2월부터 5월까지 농민단체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이를 기초로 보완된 하원농업법안이 7월 27일 상정되었다. 10월 5일에는 하원 농업법안(Farm Security Act of 2001: HR 2646)이 291대 120으로 통과되어 11월 9일 상원에 이첩되었다. 11월 2일에는 하킨 (Tom Harkin) 의원의 농업법 (Agriculture, Conservation, and Rural Enhancement Act of 2001: ACRE)

* 연구위원

** 부연구위원

*** Daniel A. Sumner :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겸 캘리포니아 대학교 농업문제연구소장

이 제안되고 이에 대해 12월 11일 대설(Daschle) 의원 수정안이 제안되어 2002년 2월 13일 상원농업법안(HR 2646)이 58대 40으로 통과되어 상하원 합동회의에 회부되었다. 4월 26일 상하원 단일안으로 확정된 2002 농업법(The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은 5월 1일 하원에서 280대 141로 가결되고, 이어서 5월 8일 상원에서 64대 35로 가결되었다. 2002 농업법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 간 미국 농업정책의 근간이 된다.

우리가 미국 농업과 농정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 농업과 농정에 미국의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산물 수입의 대미 의존도가 높고, 쇠고기 패널, BOP 줄임, UR 농업협상 등에서 미국은 우리나라 농업, 농정에 대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도하개발어젠더(DDA)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 농정은 우리 농업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벤치 마킹 대상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농업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높은 생산성을 나타냈으며 농산물, 생산지역, 농가 구성 등의 측면에서 커다란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국내소비량이 농산물 생산량을 만성적으로 초과하여 많은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면서도 많은 기호식품 원료를 중심으로 수입하는, 높은 무역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 농정은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정부개입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농가호수는 1935년을 정점으로

1973년까지 급감하다 감소세가 둔화되어 2001년에는 220만 호이다. 반면에 호당 경지면적은 1935년부터 1974년까지 급증 후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1년에는 호당 평균 약 200ha에 달했다.

미국의 농가는 상업농(commercial farms), 중간농(intermediate farms), 농촌거주농(rural-residence farms)으로 분류된다. 상업농은 연간 매출 25만 달러 이상의 농가인데, 대가족농-거대가족농-기업농으로 세분된다. 중간농은 연간 매출 10 내지 25만달러의 전업농인데, 저매출농(low-sales farms)·고매출농(high-sales farms)으로 세분된다. 농촌거주농은 연간 매출 25만달러 미만의 부업농인데, 저자원농(limited-resource)·은퇴농·전원생활농으로 세분된다.

상업농은 전체 농가호수의 9.6퍼센트인데 농업생산액의 68.6퍼센트를 차지한다(1998년). 또한 직접지불을 포함한 정부보조 중에서 품목별 보조는 상업농이 차지하는 한편, 환경보전 관련 보조금은 소규모 농가가 그 대부분을 지급받는 것이 구조적인 특징이다.

미국 농정이 해결하고자 하는 농업의 기본 문제는 과잉생산능력(excess capacity)과 그에 따른 가격 및 소득의 저위 문제이다. 이러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으며, 미국정부는 시장개입을 지속해 왔다. 시장개입 수단에는 융자, 국경보호, 수출촉진 등이 있으며,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직접지불과 연구개발 등 간접지원도 계속되었다. UR 이

표 1 미국 농업이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1 2000

단위: %

구 분	인 구 비 중		산 업 비 중		수출비중	수입비중	세 출 비 중	
	농업관련산업	농 업	농업관련산업	농 업	농 업	농 업	농무부	농업관련
1991	18.8	1.6	14.7	1.2	9.5	4.6	4.1	1.1
1992	18.0	1.5	14.6	1.2	10.0	4.7	4.1	1.1
1993	18.3	1.4	14.4	1.1	9.8	4.4	4.5	1.4
1994	18.5	1.4	14.6	1.1	9.3	4.2	4.2	1.0
1995	18.5	1.5	14.2	1.0	10.2	4.1	3.7	0.6
1996	18.1	1.5	13.8	1.1	10.4	4.3	3.5	0.6
1997	17.7	1.4	13.2	1.0	8.9	4.2	3.3	0.6
1998	17.6	1.3	12.9	0.8	8.4	4.1	3.3	0.7
1999	17.5	1.3	12.7	0.7	7.7	3.8	3.7	1.4
2000	17.1	1.2	12.8	0.8	7.2	3.3	4.2	2.0
평 균	18.0	1.4	13.8	1.0	9.1	4.2	3.8	1.1

자료: USDA, *Agricultural Statistics*, 각년도

후 세계적인 농정 흐름에 따라 시장에 대한 직접개입보다는 시장중립적인 직불 쪽으로 농정수단이 전환되었다.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미국 농정의 기본 구조를 좀더 비판적으로 살펴보자. 농업의 高 생산성에서 비롯된 과잉공급 능력은 가격 및 소득 저위를 유발하였다. 이를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가격 지지와 국경조치를 통하여 시장에 개입하였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익년도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낮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지속되었다.

가격을 지지하여 소득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생산면적을 제한하는 생산조정제도 열등지를 휴경하는 경향(slippage) 때문에 소기의 목표대로 생산량을 줄이는 데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 새로 도입된 직접지불은 그 혜택이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추세인데도, 농업

지원의 결과 地價가 인상되어 납세자의 부담으로 지주의 자산을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역사적 관행으로 지원 품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농가의 경영상 특성이 무시되는 무차별적 지원이라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미국 농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정책수단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직접지불(direct payments)은 품목별 직불(commodity program payments), 생산자유계약(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s), 환경보전 직불(conservation program payments)로 나눌 수 있는데, 고정된 단가와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융자부족불(loop deficiency payments)과 마케팅 론(marketing loan)은 정책 품목에 대한 시장가격과 융자단가와 차액에 대한 보상금이다. 긴급지원(market loss assistance)은 직불액 단가를 높여 주는 수단이다. 이 밖에 일부 품목에 대한 국경보호조치(border measures)가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관세율쿼터(TRQ)이다.

농업보호 정책수단을 품목별로 보면, 직접보조는 곡물, 면화, 낙농에 주로 적용되고, 국경정책은 낙농, 설탕, 땅콩에 적용되며, 정부가 주도하는 카르텔 형태의 생산 및 유통 통제는 낙농, 땅콩, 담배에 적용된다. 반면에 정책에서 제외된 품목에는 채소, 과실, 육류 등 상업성이 강하거나 로비가 약한 품목이 해당된다.

2. 미국 농업법의 역사적 전개

1920년대까지의 미국 농정은 무역 장벽을 통한 농업보호와 농지분배가 주요 정책수단이었다. 당시 정부의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을 통한 농가소득 지지가 제안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 대공황 이후 도농간 균형소득 개념이 등장하여 지금까지 미국 농정의 이념적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관련 주요입법 역사를 보면, 농업법의 효시인 「1933년 농업조정법」, 대법원에 의해 일부 폐기되었던 농업조정법 재입법한 「1938년 농업법」, 주요 농가지원 프로그램의 恒久法인 「1949년 농업법」, 농가지지 수단의 개혁을 시작한 「1985 농업법」, 개혁을 지속하고 경작 자율성을 제고시킨 「1990 농업법」, 목표가격을 폐지시키고 경작 자율성을 더욱 제고시킨 「1996 농업법」 등이다. 이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1930년대

1933년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3)은 미국 최초의 농업법이며, 생산조정·상품신용공사(CCC) 설립 등 가격지지 정책을 법제화하였다. 정책혜택은 해당 품목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옥수수, 소맥, 면화 등 기초·저장성(basic, storable)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지지를 목적으로 한 융자제도를 의무화하였다. 1933년 농업조정법의 생산조정조항이 1936년 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나와 폐기되었으나 민주당 정권은 1938년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는 변제 의무면제융자제(non-recourse loan), 경작 면적할당(acreage allotments), 기초작물에 대한 판매쿼터제, 가격과 소득에 대한 “패리티” 개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농산물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의의 식부면적감축계획(식부면적할당)과 의무적 식부면적감축계획(판매할당)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판매할당이 실시된 때에는 상품신용공사(CCC)가 농산물을 구매하게 되고 나아가 상환청구권이 없는 융자(loan)제공을 통하여 가격을 지지하였다.

2.2.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농업생산 장려를 위해 지지가격이 점차 인상되어 패리티가격의 90%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높은 지지가격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농업생산력 회복에 따른 과잉생산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 트루만 정권은 1938년 농업조정법 중에서 가격지지조

함을 폐지하여 1949년 농업법(Agricultural Act of 1949)을 제정하였다. 식부면적할당 또는 판매쿼터제가 실시된 경우, 기초농산물에 대해 1950년산은 패리티의 90%로 동결하고, 51년산은 80%, 52년산 이후는 75%로 인하하였다. 생산자가 판매쿼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격수준은 패리티가격의 50%를 적용하였다. 1949 농업법은 1938 농업법과 함께 항구적 농업법(permanent agricultural legislation)이라 불리며 현행 농업법의 적용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농업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 법들이 다시 적용된다.

2.3. 1950년대

한국전쟁 전시수단으로 지지가격이 1954년까지 패리티의 90%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종결됨에 따라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해져 아이젠하워 정권은 1954년 농업법(Agricultural Act of 1954)을 제정하였다. 과잉문제가 특히 심각한 소맥과 사료작물의 생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격의 수급조정 기능 및 식부면적 감축정책을 강화하였다. 1954년 농산물무역개발원조법(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t Act of 1954: PL480)이 제정되어, 해외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대외정책 수행에 잉여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확충되었다.

2.4. 1960년대

농산물 과잉경향이 지속되면서 농가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1962년 농업법(Food and Agricultural Act of 1962)과 1964년 농업법(The Agricultural Act of 1964)에서

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식부면적을 감축하는 ‘공급조정’ 개념이 도입되었다. 지지가격은 국제가격수준까지 인하되었지만 생산자 소득보상은 그 인하분 상당액을 직접 지불하였으며 PL480을 활용한 수출진흥정책이 강화되었다.

2.5. 1970년대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1972년 소련의 대량구매와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으로 인한 달러 약세화가 가세하여 급속히 증대되었다. 그 후에도 이상기온 등의 현상으로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였다. 국제가격은 높게 유지되었고, 금융기관이 농가에게 농지취득을 위한 자금을 손쉽게 대출해 주었기 때문에 농업투자가 증가하였다. 1973년 농업법(Agricultural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1973)은 소맥과 사료곡물 및 면화를 대상으로 목표가격(target price)을 통한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1977년 농업법(Food and Agriculture Act of 1977)은 1970년대 말 과잉재고를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하여 농가보유비축제도(farmer-owned reserve)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상품신용공사가 보유하는 정부재고 이외에 농가 재고를 통한 재고관리가 가능해졌다.

2.6. 1980년대

1980년대에는 각국의 농산물 생산 증가, 대소곡물금수조치, 개발도상국 누적채무문제에 의한 수요정체로 인하여 공급과잉이 심해져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

화되었다. 미국 농산물 수출은 달러화 강세와 높은 지지가격 수준 때문에 급감하였다. 특히 70년대에 많은 빚을 지게 된 농가는 농산물가격의 정체에다 고금리, 농자가격 하락으로 경영이 어려워졌다. 1981년 농업법(Agriculture and Food Act of 1981)은 기본적으로 목표가격과 용자가격 등 1977년 농업법체계를 계승하면서 국제 가격경쟁력을 회복코자 한 것이다. 쌀에 대한 생산조정과 판매쿼터제를 중지하고 낙농지지가격을 인하하였다. 레이건 정부는 심각한 재정적자 하에서 거액의 재정자금을 투입하면서도 농업불황이 더욱 악화되자 가격 및 소득 지지수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1985년 농업법(Food Security Act of 1985)을 제정하였다. 이는 그 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시장지향적 농정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즉 전통적인 가격지지를 통한 소득지지 방식을 점차 직접지불을 통한 소득보조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2.7. 1990년대

1990년 농업법 (The Food, Agriculture, Conservation, and Trade Act of 1990)은 농정의 시장지향적 개혁을 지속하였다. 목표가격을 동결시키고 경작 자율성을 제고시켰다. 농촌개발, 임업, 원예산업, 곡물품질, 유기농산물 인증제, 지구 기후변화, 수출촉진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종합농업법(omnibus agricultural act)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3. 1996 농업법과 농정의 선회

미국은 1996 농업법 (FAIR: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1996. 4. 4. 시행)에서 종전의 부족불(Deficiency payment)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자유계약(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제를 실시하였다. 1996 농업법은 부족불제뿐만 아니라 휴경의무 조항, 최소 경작면적 제한, 작목 제한, 농가 저장 보조 등을 폐지하였다.

1996 농업법의 직불제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간의 직접지불 총액과 품목별 지급액을 미리 정해 놓고 이를 해당 품목의 생산과는 관계없이 지불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이 낮아진 1998년 이후 직불대상 농가에게 기존의 직불금액을 기준으로 1998년에는 50%, 1999년 이후에 100%를 추가 지급하였다.

1996 농업법은 약 10년 전부터 추진해온 시장지향적 농정 개혁 (1985 및 1990 농업법)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1996 농업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직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1) 생산자유계약지불제: 소맥,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면화, 쌀의 기초면적에 대한 직접지불
- 2) 용자부족불제(Loan deficiency payments): 생산자유계약지불제 해당 품목 전체와 대두 등 유지작물에 대하여, 마케팅 론에 참여하지 않는 생산

자에게 융자가격(loan rate)보다 낮은 상환가격(loan repayment rate)과 시장가격의 차액만큼을 지불함으로써 정부가 농산물을 담보로 설정하지 않고도 동일한 지원을 생산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3) 보전유보프로그램(CRP: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농지를 보전 목적으로 10 내지 15년간 장기 휴경하고 (최대 3,640만에이커) 정부로부터 매년 휴경보상금 및 환경보전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프로그램
- 4) 비보험보상(NAP: Noninsured Assistance Program): 연방 작물보험의 대상이 아닌 작물에 대하여 단수변화 위험을 보상하는 프로그램. 지역 손실 35퍼센트 및 개별 농가 손실 50퍼센트 기준을 넘는 재해에 대해 정부가 직접지불 형태로 보상하는 프로그램
- 5) 기타직불제: 보전유보프로그램 이외의 환경보전 목적 직불제가 시행 중임.

1996 농업법에 의한 직불제 실시에 따라 2002년까지 정부의 농가 직접지원액이 예시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졌으며, 이러한 변화를 미국 농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작목선택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져서 작목의 선택에 수익성 등 시장원리가 더욱 크게 작용하게 되었다. 반면에 농산물 시장가격의 불안정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서 유통전략 및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된 점이 특징이다.

4. 2002 농업법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에 놓인 1998년부터는 생산자율계약 직불제의 농가지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즉 생산자율계약 직불제의 주요내용인 직접지불과 생산품목 선택의 자율성 제고는 성립 후 생산자들의 환영을 받았고 정책 참여율도 매우 높았으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격과 연동시키는 소득 안정화 정책으로의 복귀를 생산자 뿐 아니라 미국 농무부에서도 주장하게 되었다.

미국은 1998년에 57억달러 규모의 농가지원자금을 재해지원프로그램(Disaster Assistance Program: FY 1999 Agricultural Appropriation Act) 명목으로 지급하였다(표 2).

이 프로그램은 26억달러를 작물 및 가축과 다년생작물 재해보상에 지출하였으며, 2억달러를 낙농인들에게 지급하는 한편, 29억달러의 시장손실보상액을 생산자율계약

표 2 미국의 1999 회계연도 농업지출법에 의한 농가 긴급지원 내역

지 원 분 야	지원액(백만달러)
재해프로그램	2,606
1998작물 손실보상	1,500
다년생작물 손실보상	875
긴급 가축 보상	203
긴급 운영자금 융자	31
시장손실 보상	2,857
낙농지원	200
합 계	5,663

자료: 미농무부

참여 농가에게 지급하였다. 생산자율계약에 참여한 농민들은 원래 계획된 1998년 생산자율계약 직불예산 총액 58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29억달러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각 계약농가에 대하여 품목별 지급률을 단순히 50퍼센트 증액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긴급시장지원은 1999년과 2000년에도 지급률을 100퍼센트 증액하는 방식으로 이어졌으며, 2002 농업법은 이를 법제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추가 지원의 WTO 합치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작물 및 가축재해지원과 긴급융자는 허용보조(green box)에 해당한다. 시장손실보상은 생산자율직불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생산중립적인 지원으로써 허용보조(green box)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시장손실이라는 지원명분이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시장가격의 하락에 대응한 농가지원이므로 이를 전적으로 생산중립적 지원이라고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더욱이 가격하락에 대응한 지원규모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산농민이 감안하여 생산의사결정을 한다면 이는 명백히 무역왜곡적인 효과를 가지는 감축대상 정책수단이다. 미국의 직불제는 지속적인 농가지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농가 지지수단은 변화했지만 농가 지지에 대한 의지 자체는 변화한 적이 없다. 또한 미국의 직불제는 농가지원처(FSA)같은 방대한 조직이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갖추고 있고, 각 농장의

작목별 기초농지면적 자료가 몇 십년 씩 비축되어 온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집행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2002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6 농업법에 비해서 높은 직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2~2011년간 735억 달러의 추가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시장손실보전직불제(counter-cyclical payment)가 신규로 도입되었고, 마케팅 론이 유지되었으며, 땅콩 지원제도 등 다수의 농가지원 프로그램이 존치되었다. 2002 농업법의 입법과정에서 하원은 생산중립적 직불을 통한 지원을 강조한 반면, 상원은 용자가격인상을 통한 지원 확대를 추구하였다. 합의된 법안은 직불액과 용자가격 모두 상원안과 하원안의 중간 정도에서 결정되었다. 또한 상원안은 환경보전지원액이 높은 수준이었고 새로운 낙농지원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여 관철시켰다. 농가당 지원액 상한은 46만달러에서 36만달러로 낮추었다.

2002 농업법은 상원안의 체계를 따라 다음과 같은 10개의 장(title)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품목정책, 2. 환경보전, 3. 농산물 무역, 4. 영양, 5. 금융, 6. 농촌개발, 7. 연구, 8. 삼림, 9. 에너지, 10. 기타.

2002 농업법은 입법 과정에서 WTO 합치성이 논의의 대상이 된 최초의 농업법이다.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된 점을 인정한 결과 감축대상 보조액이 미국 농업보조총액(AMS, 2000년 이후 191억달러)를 초과하면 보조금을 삭감할 예정이다.

표 3 정책품목의 용자단가, 2002 2007

	2002 2003	2004 2007
옥수수(\$/부셀)	1.98	1.95
수수(\$/부셀)	1.71	1.95
보리(\$/부셀)	1.65	1.85
귀리(\$/부셀)	1.21	1.33
밀(\$/부셀)	2.58	2.75
대두(\$/파운드)	5.26	5.00
유지작물(\$/파운드)	0.093	0.093
면화(\$/파운드)	0.5192	0.5200
쌀(\$/100파운드)	6.50	6.50

5. 2002 농업법의 함축성

미국 농업은 다양성과 과잉생산능력이 특징인데, 미국정부는 농업법을 통해 과잉에서 비롯된 가격 및 소득의 저위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농업의 여건은 급변하였으나 휴경, 수출, 직불을 통한 정부지원으로 농업을 보호한다는 농정의 기본정신은 2002 농업법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또한 총예산 규모를 결정한 후 분야별 지원방법을 결정하는 농업법 입법체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농정은 1985 농업법과 1990 농업법에 의한 시장지향적 개혁 후 1996 농업법에서 개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자 미국 정부는 농정의 과거 회귀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농업지원을 강화하였으며, 2002 농업법은 이러한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2002 농업법 입법이 시사하는 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자가 6년간의 기대소득을 미리 알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농업법에 의한 농정체계의 요체는 품목생산자가 목표가격, 용자가격, 직불액 등을 통해서 농업경영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둘째, 시장의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적극적인 소득 안전망 정책을 도입하였다. 1998년 시장손실지원(Market Loss Assistance)제가 도입될 당시에도 시장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성격의 농업지원은 생산중립적이지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다. 국제적으로도 WTO 정신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그러나 미국 의회와 정부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정개혁의 정신을 거스르면서 시장손실과 연계된 지원방안을 내어 놓았고, 이것은 2002 농업법에서 직불단가의 인상과 시장손실보전 직불제의 신설로 법제화되었다.

셋째, 2002 농업법에는 과거의 농업법과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주체에 대한 광범위하고 오래된 농업경영자료가 뒷받침되어 있다. 다양한 품목 및 환경보전 직불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지표의 역사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2002 농업법에 규정된 지극히 상세한 프로그램 참여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영자료가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직불제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농업법이 차질 없이 운영되는 데에는 이러한 통계적 인프라가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최정섭. 권오상. “미국의 1996 농업법.” 농촌경제 19(2). (1996 여름): 107-129.

Glauber, J., 1998. “Does Ad Hoc Assistance Distort Trade?” A Comment on Sumner and Josling's Paper Entitled “The Role of the State in Agricultural Trade in North America: The U.S.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as a Government Actor in the North American Market for Grains.” Presented at the North American Forum at Stanford University, November 20-21.

Sumner, D.A. and Hyunok Lee. “The U.S. Farm Bill and the WTO: Implications for Korea.” 「미국 신농업법 입법 동향」. KREI 국제세미나 자료. pp.31-46.

<http://www.ers.usda.gov/Features/FarmBill/>

부록: 1996 농업법과 2002 농업법의 주요 내용 대비

1. 품목별 정책 (Commodity Policy)¹

정 책 명	1996 2001년 정책	2002 농업법															
직접지불 (소맥, 사료곡물, 면화, 쌀, 유지작물)	1991 95 기간 어느 한해라도 소맥, 옥수수, 보리, 수수, 귀리, 면화, 쌀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는 한번 계약함으로써 7년 (1996 2002) 간의 생산자물계약에 참여할 수 있음. 품목별 “기준 생산량”은 $0.85 \times \text{기준면적} \times \text{기준단수}$. 품목별 단위생산량(예, 부셀) 당 지급액은 품목별 연간 총 지불계약액을 해당 품목의 참여농가 전체 기준생산량으로 나누어 결정함. 개별 농가의 품목별 연간 계약지불액은 품목별 단위생산량 당 지급액×해당 품목의 기준생산량이며, 품목별 지불액을 모두 합치면 한 농가에 대한 지불액임. 이 금액은 농가당 지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소맥, 옥수수, 보리, 수수, 귀리, 면화, 쌀 생산농가는 직불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음. 대두, 기타 유지작물, 땅콩에 대한 직불제가 추가됨(땅콩에만 해당되는 조항은 별도 설명). 상기 직불혜택을 받기 위해서 생산자는 매년 계약하여야 함. 2002 작물년도의 직불액은 2002 농업법이 효력을 발휘한 후 계약과 동시에 지급될 것임. 2003-07 작물년도의 직불은 수확되는 연도의 10월 1일 이후에 이루어 질 것임. 50 퍼센트 한도 내의 선급금은 해당 품목의 수확년도 전년 12월 1일부터 수령할 수 있음.															
	각 회계연도의 총지불액은 고정됨: 1996년 55억7천만달러, 1997년 53억 85백만달러, 1998년 58억달러, 1999년 56억 3백만달러, 2000년 51억 3천만달러, 2001년 41억 3천만달러, 2002년 40억 8백만달러. 쌀을 제외한 품목의 지급한도액은 1996 회계연도의 지급액과 1995 작물연도의 회수액을 감안하여 조정됨. 쌀에 대한 지급한도액은 1997 2002 회계연도 동안 매년 850만달러 씩 증액됨. 각 품목별 지급액 비율은 소맥 26.26%, 옥수수 46.22%, 수수 5.11%, 보리 2.16%, 귀리 0.15%, 면화 11.63%, 쌀 8.4%임. 유지작물은 생산자물계약지불제에서 제외됨.	2002 농업법에 규정된 직불 단가: 소맥 \$0.52/부셀 옥수수 \$0.28/부셀 수수 \$0.35/부셀 보리 \$0.24/부셀 귀리 \$0.024/부셀 면화 \$0.0667/파운드 쌀 \$2.35/100파운드 대두 \$0.44/부셀 기타 유지작물 \$0.008\$/파운드 2002 회계연도의 생산자물계약직불이 2002 농업법 입법 전에 지급되었으므로 2002년 지불액은 그에 따라 조정될 것임.															
시장보전직불 (Counter-Cyclical Payments: 소맥, 사료곡물, 면화, 쌀, 유지작물)	추가입법에 의해 시장손실지원(Market Loss Assistance: MLA)을 소맥, 사료곡물, 쌀 및 면화에 대해 1998-2001 작물연도 중 실시함. 지불액은 생산자물계약직불액에 비례하여 지급. 작물연도별 지불총액은 1998년 28억 57백만달러, 1999년 55억달러, 2000년 54억 65백만달러, 2001년 46억달러. 1999-2001 회계연도 중 지급된 유지작물 직불액은 1997, 1998 또는 1999년 재배면적을 기준함. 지불액은 1999년 4억 75백만달러, 2000년 5억달러, 2001년 4억 24백만달러.	시장보전직불(Counter-Cyclical Payments: CCP)은 정책 품목의 유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한 경우 지급됨. 유효가격은 1) 유통연도의 전국평균가격 또는 해당 품목의 용자단가 중 높은 가격과 2) 해당품목에 대한 직불단가를 합친 가격임. 개별 농가에 대한 지급액은 $\text{기준단가} \times \text{기준면적} \times \text{기준단수}$. CCP 목표가격 <table><tr><td></td><td>2002-03</td><td>2004-07</td></tr><tr><td>소맥</td><td>\$3.86/부셀</td><td>\$3.92/부셀</td></tr><tr><td>옥수수</td><td>\$2.60/부셀</td><td>\$2.63/부셀</td></tr><tr><td>수수</td><td>\$2.54/부셀</td><td>\$2.57/부셀</td></tr><tr><td>보리</td><td>\$2.21/부셀</td><td>\$2.24/부셀</td></tr></table>		2002-03	2004-07	소맥	\$3.86/부셀	\$3.92/부셀	옥수수	\$2.60/부셀	\$2.63/부셀	수수	\$2.54/부셀	\$2.57/부셀	보리	\$2.21/부셀	\$2.24/부셀
	2002-03	2004-07															
소맥	\$3.86/부셀	\$3.92/부셀															
옥수수	\$2.60/부셀	\$2.63/부셀															
수수	\$2.54/부셀	\$2.57/부셀															
보리	\$2.21/부셀	\$2.24/부셀															

¹ <http://www.ers.usda.gov/Features/FarmBill> 내용을 요약 번역한 자료임.

정 책 명	1996 2001년 정책	2002 농업법
		귀리 \$1.40/부셀 \$1.44/부셀 면화 \$0.724/파운드 \$0.724/파운드 쌀 \$10.50/100파운드 \$10.50/100파운드 대두 \$5.80/부셀 \$5.80/부셀 기타유지작물 \$0.098/파운드 \$0.101/파운드 농무장관은 CCP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작물의 작물연도가 끝나는 즉시 시행하여야 함. 수확된 해의 10월에 최고 35% 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익년 2월 1일 이후 최고 70%에서 선급금을 제한 2차 지불액을 지급함. 잔금은 작물연도 종료 후 초기에 지급
지불액 및 시장보전지불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면적(Acreage base)과 기준면적(Payment acres)	계약면적은 이전 농업법에 의한 1996년의 기초면적에 보전유보정책(Conservation Reserve Program:CRP) 참여가 종료된 기초면적을 더하고 새로 CRP에 참여한 기초면적을 제한 면적임. 농가는 계약 가능면적의 일부만 참여할 수도 있음.	각 농가는 정책품목 전체에 대한 기초면적을 다음 두가지 중에서 선택하여 산정하여야 함. · 해당 품목에 대한 1998 2001 작물연도의 연평균 재배면적에 “재배제외(prevented from planting)”면적을 합친 면적을 반영하여 기초면적을 갱신. · 소맥, 사료곡물, 면화, 쌀에 대한 2002년 생산자율계약 면적에 유지작물에 대한 1998 2001 작물연도의 연평균 재배면적에 재배제외면적을 합친 면적. 일반적으로 유지작물 기초면적은 해당 작물연도의 전체 정책품목 면적과 2002 계약면적의 차이를 초과할 수 없음. 각 농장 소유주에게는 기초면적 산정 방법에 대하여 한번의 기회가 주어짐. 산정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2002 생산자율계약 면적과 4개년 평균 유지작물 재배면적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됨. 기초면적은 재배가능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농무장관은 CRP 계약이 종료된 면적에 대해서는 기초면적을 조정하여야 함.
	계약면적의 85%에 대해 지불이 이루어짐.	지불면적은 기초면적의 85%임.
지불액계산을 위한 기준단수	기준단수는 1995년 수준에 고정됨.	정책품목에 추가된 대두와 유지작물을 제외한 기존 품목에 대한 기준단수는 불변. 유지작물의 기준단수는 농가별 1998 2001 작물연도의 평균단수 $\times$ 1981 85 전국평균단수 $\div$ 1998 2001 전국평균단수. 시장보전지불의 기준단수는 직불제 단수를 적용하거나 다음 산정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계약기간 중 갱신할 수 있음. · 기준단수에 2002년 기준단수와 1998 2001 평균단수 차이의 70%를 가산하거나 · 1998 2001 평균단수의 93.5%를 사용.

정 책 명	1996 2001년 정책	2002 농업법																																										
정책참여자의 경작자율성과 제한	참여농가는 전체 계약면적의 100%에 과일과 채소를 제외하고는 아무 품목이나 재배할 수 있음. 농지는 농업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건조재배, 방목, 알팔파나 다른 사료작물의 파종과 수확은 제한없이 허용되며 이로 인해 직불액의 감액을 받지 않음. 농가가 채소나 과일을 재배한 기록이 없으면 이들 작목(일부 두과작물 제외)의 재배는 금지됨. 허용된 두과작물 재배면적은 직불액 계산에서 제외됨. 해당 지역에서 채소나 과일의 2기작 관행이 있으면 이러한 재배는 직불액 감액 요인이 되지 않음. 야생쌀은 2000년 농업예산법에서 금지 품목 목록에 추가됨.	2002 농업법의 경작자율 규정은 야생쌀이 금지 품목이라는 점만 제외하고는 1996 농업법과 동일함. 일반적으로 재배금지 품목 조항은 수확기준임. 1996 농업법에서는 파종기준이었음.																																										
	보전규정 준수 의무(conservation compliance requirements)가 부과됨.	보전규정 준수 의무(conservation compliance requirements)가 부과됨.																																										
유통지원융자 (Marketing Assistance Loans) 및 융자부족불 (Loan Deficiency Payments: LDP)	마케팅 론 형태의 변제이무 면제 융자제 지속. 경작자율계약 농가가 생산하는 정책농산물은 모두 융자 대상임. 소맥, 사료곡물, 면화에 대한 융자단가 책정 공식은 일정한 상한선이 있으나 그대로 유지됨. 마케팅 론 때문에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보다 낮을 때 융자금을 원금에 이자를 합친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환 가능. 꿀, 양모, 양골라털은 1996 농업법에서 제외됨. 2001 회계연도 보충 입법에서 꿀에 대한 마케팅 론 추가.	마케팅 론 형태의 변제이무 면제 융자제 지속. 융자단가는 법에 의해 고정됨. 마케팅 론은 땅콩, 양모, 양골라털, 꿀, 두과작물에도 적용됨. 융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불제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무 철폐.																																										
	융자기간은 9개월인데, 면화에 대해서는 10개월임.	면화에 대한 융자기간이 10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됨.																																										
	ELS 면화에 대한 융자는 변제이무면제 융자이므로 융자단가에 이자를 합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함.	조항 유지.																																										
융자단가	소맥, 옥수수, 대두에 대한 융자단가는 이전 5년간의 농가판매가격의 올림픽평균의 85% 이상으로 정하는데 부셸당 상한선은 소맥 2.58달러, 옥수수 1.89달러, 대두 4.92달러 이상 5.26달러 이하임. 수수, 보리, 귀리의 융자단가는 사료용 옥수수 대비 공정한 가격에서 설정. 해바라기씨, 카놀라 등 기타 유지작물의 융자단가는 해바라기씨의 5개년 올림픽 평균의 85%이상인데, 0.087달러 이상 0.093달러 이하. 발면화의 융자단가는 현물시장 5개년 올림픽평균 가격의 85% 또는 북유럽가격의 90%중에서 낮은 가격에 정하는데, 상한은 파운드당 0.5192달러, 하한은 파운드당 0.5달러임. ELS 면화의 융자단가는 5개년	융자단가는 고정됨. <table border="1"> <thead> <tr> <th></th><th>2002-03</th><th>2004-07</th></tr> </thead> <tbody> <tr> <td>소맥</td><td>\$2.80/부셸</td><td>\$2.75/부셸</td></tr> <tr> <td>옥수수</td><td>\$1.98/부셸</td><td>\$1.95/부셸</td></tr> <tr> <td>수수</td><td>\$1.98/부셸</td><td>\$1.95/부셸</td></tr> <tr> <td>보리</td><td>\$1.88/부셸</td><td>\$1.85/부셸</td></tr> <tr> <td>귀리</td><td>\$1.35/부셸</td><td>\$1.33/부셸</td></tr> <tr> <td>쌀</td><td>\$6.50/100파운드</td><td>\$6.50/100파운드</td></tr> <tr> <td>대두</td><td>\$5.00/부셸</td><td>\$5.00/부셸</td></tr> <tr> <td>기타유지작물</td><td></td><td></td></tr> <tr> <td></td><td>\$0.096/부셸</td><td>\$0.093/부셸</td></tr> <tr> <td>발면화</td><td>\$0.52/파운드</td><td>\$0.52/파운드</td></tr> <tr> <td>ELS면화</td><td></td><td></td></tr> <tr> <td></td><td>\$0.7977/파운드</td><td>\$0.7977/파운드</td></tr> <tr> <td>땅콩</td><td>\$355/톤</td><td>\$355/톤</td></tr> </tbody> </table>		2002-03	2004-07	소맥	\$2.80/부셸	\$2.75/부셸	옥수수	\$1.98/부셸	\$1.95/부셸	수수	\$1.98/부셸	\$1.95/부셸	보리	\$1.88/부셸	\$1.85/부셸	귀리	\$1.35/부셸	\$1.33/부셸	쌀	\$6.50/100파운드	\$6.50/100파운드	대두	\$5.00/부셸	\$5.00/부셸	기타유지작물				\$0.096/부셸	\$0.093/부셸	발면화	\$0.52/파운드	\$0.52/파운드	ELS면화				\$0.7977/파운드	\$0.7977/파운드	땅콩	\$355/톤	\$355/톤
	2002-03	2004-07																																										
소맥	\$2.80/부셸	\$2.75/부셸																																										
옥수수	\$1.98/부셸	\$1.95/부셸																																										
수수	\$1.98/부셸	\$1.95/부셸																																										
보리	\$1.88/부셸	\$1.85/부셸																																										
귀리	\$1.35/부셸	\$1.33/부셸																																										
쌀	\$6.50/100파운드	\$6.50/100파운드																																										
대두	\$5.00/부셸	\$5.00/부셸																																										
기타유지작물																																												
	\$0.096/부셸	\$0.093/부셸																																										
발면화	\$0.52/파운드	\$0.52/파운드																																										
ELS면화																																												
	\$0.7977/파운드	\$0.7977/파운드																																										
땅콩	\$355/톤	\$355/톤																																										

정 책 명	1996 2001년 정책	2002 농업법
	농가판매가격의 올림픽 평균의 85%인데 상한은 파운드 당 0.7965달러임. 쌀은 100파운드 당 6.5달러에 고정됨. 농무장관은 재고율에 따라서 소맥과 사료곡물의 용자단가를 조정할 권한을 가짐. 재고율이 소맥 15 내지 30%이거나 옥수수 12.5 내지 25%이면 용자단가를 5% 감액할 수 있음. 재고율이 그 이상이면 용자단가를 10% 감액할 수 있음.	등급판정 양모 \$1.00/파운드 \$1.00/파운드 등급비판정 양모 \$0.40/파운드 \$0.40/파운드 앙골라털 \$4.20/파운드 \$4.20/파운드 꿀 \$0.60/파운드 \$0.60/파운드 Small chickpeas \$7.56/100파운드 \$7.43/100파운드 렌즈콩 \$11.94/100파운드 \$11.72/100파운드 Dry peas \$6.33/100파운드 \$6.22/100파운드
마케팅 론 상환단가	마케팅 론은 소맥, 사료곡물, 면화, 쌀, 대두, 기타 유지작물에 적용됨. 마케팅 론 상환단가는 소맥, 사료곡물, 유지작물에 대해서는 지역별 공시가격(Posted county prices: PCPs)에 기초하고, 쌀과 면화는 국제가격에 기초함. PCP는 정부에 의해서 매일 공시되는데 기타 유지작물의 경우는 매주 공시됨. 쌀과 면화에 대한 국제가격도 매주 공시됨.	소맥, 사료곡물, 유지작물, 면화에 대한 마케팅 론 상환은 지속됨. 마케팅 론은 땅콩, 양모, 앙골라털, 꿀, 두과작물에 확대 실시됨.
용자부족불제 (Loan Deficiency Payments: LDPs)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용자부족불제는 품목별 시장가격이 용자단가에 못 미치면 시행됨. LDP는 품목별 용자단가와 마케팅 론 상환가격의 차액만큼 지급됨. LDP는 ELS 면화를 제외한 모든 정책 품목에 적용됨.	용자부족불제는 약간 변형되어 유지됨. 대상 품목이 땅콩, 양모, 앙골라털, 꿀, 두과작물로 확대됨. 모피, 건초, 사일리지도 해당됨.
	2000년 농업위험보호법은 소맥, 보리, 귀리, tricale을 재배하던 경지에 방목을 할 경우 LDP 수혜자격을 부여함. 지불 기준 생산량은 방목면적에 농가의 해당 품목의 생산자율계약 지불단수를 곱함.	변화없음.
낙농: 우유 관련 양대 정책수단은 우유가격지지와 연방 우유 유통명령제임.		
연방 우유 유통명령제 (Federal Milk Marketing Orders)	연방 우유 유통명령은 33개에서 11개로 축소됨. 우유가격 책정을 위한 복수 기준지역제가 승인됨. 캘리포니아는 독자적인 시유기준을 유지토록 함. 시유판매촉진정책은 2002년까지 연장됨.	연방 우유 유통명령제는 유지됨.
정부수매를 통한 가격 지지(버터, 무지방 분유, 치즈)	유지방을 3.67% 함유한 우유의 100파운드 당 최저가격은 1996년 10.35달러에서 1999년 9.9달러로 매년 0.15달러 씩 인하됨. 가격지지는 1999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추가이법에 의해서 2002년 5월 31일까지 연장됨. 농무장관은 CCC 재정 절감을 위해서 무지방분유와 버터간 지지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이러한 가격 조정은 역년당 2회에 한함.	유지방을 3.67% 함유한 우유의 100파운드 당 최저가격은 9.9달러에 고정됨. 나머지 정책은 유지.

정 책 명	1996 2001년 정책	2002 농업법
낙농 유통손실지원 (National dairy market loss payments)	유통손실지원금은 추가입법에 의해 1999 2001년에 지불됨.	낙농 유통손실지원 직불제가 도입됨. 낙농가들은 2005년 9월 30일을 기한으 로 계약함. 유자격자에게는 연방유통명 령 제1호에 의거 보스턴에서의 1유형 100 파운드 당 월평균가격이 16.94달러 를 밑돌면 매월 직불액을 지급받음. 직불액은 해당월의 보스턴 우유 유통명 령상 유형1 우유의 100 파운드 당 가격 을 16.94 달러에서 뺀 액수의 45%임. 낙농가의 직불 기준물량은 해당 월에 시판한 물량임. 직불한도는 매년 시판량 기준 240만 파 운드임. 2001년 12월 1일부터의 시장손실 을 소급하여 보전하기 위한 직불이 실시 됨. 낙농가들이 직불액을 늘리기 위하여 경영을 변동시키는 것은 허락되지 않음.
낙농제품수출유인프로 그램(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 DEIP)	DEIP는 2002년까지 연장됨. 농무장관은 UR에서 허용된 낙농제품 수출을 달성 하기 위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여야 함. DEIP는 시장개척을 위 한 프로그램임.	DEIP는 2007년까지 연장됨.
땅콩		
가격지지	땅콩가격지지는 쿼터 땅콩(국내식용소비 용)에 대한 변제의무면제 용자제와 기타 땅콩 지지프로그램으로 2원화되어 있던 것을 “순비용 제로”프로그램으로 개편함. 땅콩쿼터 보유자에 대한 쇼트 톤당 지지가 격은 1995년 678달러에서 610달러로 인하 되어 고정됨. 기타 땅콩에 대한 용자제는 유지되었지만 쿼터 땅콩에 비해서 낮은 수 준인 톤당 132달러. 생산자와 1차 구매자 가 공동부담하는 마케팅 부과금은 1966년 에는 용자단가의 1.15%고, 1997 2002 생 산량에 대해서는 용자단가의 1.2%였음.	땅콩 가격지지프로그램은 직불제와 시장 보전직불제로 변경되고, 마케팅 론형태의 변제의무면제 용자제를 가미함. 쿼터에 대 한 보상으로 마케팅 쿼터는 폐지함. 마케팅 론과 용자부족불제를 시행하는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땅콩생산자들은 생산물을 담보로 용자를 받을 수 있음. 용자단가는 톤당 355달러에 고정. 생산자 들은 저장된 땅콩을 최대 9개월까지 담 보로 할 수 있으며 용자금을 1) 톤당 355 달러 더하기 이자 또는 2) 농무부가 정 한 더 낮은 가격에 상환할 수 있음.
직불제	해당없음.	톤당 36달러의 직불제가 신설됨. 이 기준 은 고정이며 시중가격에 관계없이 지불됨. 직불액은 기준기간(1998 2001)의 기초 면적에 지불됨. 2002년에는 1998 2001 동안 생산실적 이 있는 농가에 지불. 2003 07에는 땅 콩생산실적이 있는 농가에 의해 생산실 적이 보증된 농장의 소유주에게 지급.
시장손실보전 직불제	보충적인 직불액이 2000년과 2001년에 지급됨.	땅콩생산자들은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인 톤당 495달러를 밑돌면 새로 도입된 시 장보전 직불을 받을 수 있음. 직불액은 목 표가격과 다음 중 높은 가격의 차액임: - 유통연도 중 12개월 전국평균 시장 가격 더하기 톤당 36달러의 직불액 - 시장지원 용자단가인 톤당 355달러 더하기 톤당 36달러의 고정 직불액 직불 기준은 1998 2001년 중 생산량.

정 책 명	1996 2001년 정책	2002 농업법
설탕		
가격지지	사탕수수 용자단가는 파운드 당 18센트로 계속 고정. 정제 사탕무우 용자단가는 1995년 수준인 파운드 당 22.9센트에 고정(이전에는 매년 변화). 설탕가공업체가 부담하는 마케팅 부과금은 원당 용자단가의 1.1%에서 1.375%로 인상됨. 사탕무우 정제업체의 부담금은 용자단가의 1.1794%에서 1.47425%로 인상됨. 농업예산법에 의해 마케팅 부담금은 2000 01년간 면제됨. 설탕 용자제에는 TRQ가 150만톤 이상으로 설정되면 변제의무가 부과됨. 이 조항은 2001년 농업예산법에서 폐지됨.	농무장관은 용자상환 불이행으로 인한 제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탕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변제의무면제 용자제는 2007년까지 연장되었는데 파운드당 용자단가는 사탕수수 원당 18센트, 정제 사탕무우 22.9센트임. 외국 생산자의 수출보조금이나 지지수준이 현행 WTO 이행계획보다 삭감되면 농무장관은 용자단가를 인하할 수 있음. 마케팅 부과금은 폐지됨. 변제의무면제 조항이 부활됨. CCC 설탕 용자의 이자율은 1% 포인트 인하됨. 상환시 30일 이전 통보 의무도 폐지됨.
현물지불(Payment-in-kind: PIK)	공급량 증가와 저가격에 대응하여 2000년과 2001년에 PIK가 실시됨. 생산자들은 일정한 면적의 수확을 포기하는 대신 CCC 재고 수량물량을 제시함. 단위면적 당 제시 물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 농가의 수량물량은 2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생산자에 대한 PIK 유지. 현행 PIK에 덧붙여 농무장관 재량으로 파종전에 CCC 보유 설탕과 재배면적을 교환할 수 있음.
관세율쿼터(TRQ)	TRQ는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가격을 CCC 용자금 변제포기 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함. UR 협상 결과 TRQ는 사탕수수 123만 톤(short ton), 정제당에 대해서는 24천 250톤으로 설정됨.	TRQ 유지. 6월 1일부로 무역대표부와 농무부는 쿼터를 보유한 수출국의 미소진 쿼터를 계산하여 다른 쿼터보유국에 재배정함.
유통량 할당(Market allotments)	1990 농업법에서 도입된 유통량 할당(공급조정)제는 중단됨.	재고조정(Inventory management)제가 도입되어 농무장관은 수급균형, 용자금 변제포기 방지, WTO와 NAFTA 이행 등의 목적으로 발동할 수 있음. 조정량은 사탕무우 가공업체와 사탕수수 생산자, 하와이와 푸에르토 리코 사탕수수 생산자 간에 할당됨. 국내식용 수입이 153.2만톤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면 할당이 중단됨. 초과생산량을 보관하는 비용은 정부부담에서 설탕산업 부담으로 전환됨. 할당제 시행 중에 국내수요 증가율을 초과하여 판매량을 증가시킨 가공업체는 일부 물량의 판매를 여기하고, 보관비용을 부담하거나 국내 소비용 이외로 처분하여야 함.
기타		
UR 합치성 (UR 협정에 의한 AMS 는 1995년 231억달러, 2000년 191억달러이며 새로운 합의시까지 이 수준 유지)		AMS 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농무장관이 판단하면, 농무장관은 보조금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최선의 실질적인 방식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 전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정 책 명	1996 2001년 정책	2002 농업법
항구입법 (Permanent Law)	농업법 입법에 실패할 때 적용되는 항구입법은 1938 농업조정법과 1949 농업법임. 사용되지 않거나 너무 오래된 조항은 제외.	항구입법 (1938 및 1949 농업법) 조항 유지
지급액 상한	생산자율계약의 개인별 지급액 상한은 4만달러로 설정됨. 1개 또는 그 이상 계약 품목에 대한 마케팅론 이득과 용자부족불 상한액은 75천달러. 그 후 입법에 의하여 마케팅론 이득 상한액은 1999, 2000, 2001년에 15만달러로 인상됨.	개인별 직불액 상한은 4만달러를 유지. 시장조정형 직불액 상한은 65천달러. 마케팅론 이득은 75만달러가 상한. 3년 평균 조수입이 250만달러를 상회하는 생산자는 조수입의 75% 이상이 농업조수입이 아니라면 직불 대상에서 제외됨. 양모 및 양골라털의 마케팅론 이득 상한액은 75천달러. 땅콩에 대해서는 직불액, 시장조정 직불액, 마케팅론 이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상한액을 적용함.
CCC 이자율	CCC가 재무부에서 차용하는 자금(1년 재무부 채권)의 비용을 반영하는 CCC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1년 재무부 채권 이자율에 1% 포인트를 가산함.	불변
작물보험	민간 보험이 충분히 발달한 주 또는 주의 일부지역에서는 농가지원국(Farm Service Agency)와 민간 보험회사가 이중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던 제도를 1997년부터 폐지함. 1999년과 2000년에는 추가적인 보험지원이 제공됨.	기본 프로그램 불변. 작물보험은 제10조에서 다룸.
	농업위험보호법(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ARPA)은 2001 05년간 82억달러의 자금을 농업보험에 지원함. ARPA는 보험가입률과 피보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을 강화함. 또한 ARPA는 조수입보험료를 보조금을 단수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함.	2006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던 피보험 수준의 연속적 선택(구간선택이 아닌) 사양은 ARPA에서 폐지함.

2. 환경보전(Conservation)

정 책 명	1996 2001년 정책	2002 농업법
유실 위험이 높은 농지보전(sodbuster)	유실위험이 높은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자가 일정한 농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조수단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해당 조항 지속. 농무장관은 농법 준수 여부 판단 권한을 민간에게 위임할 수 없음.
습지보전 (swampbuster)	경작을 위해서 습지의 물을 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수단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해당 조항 지속. 농무장관은 농법 준수 여부 판단 권한을 민간에게 위임할 수 없음.

정 책 명	1996 2001년 정책	2002 농업법
휴경(Land retirement)		
종합보전강화제 (Comprehensive Conservation Enhancement Program: CCEP)	환경보전경지유보프로그램(Environmental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ECARP)은 보전유보프로그램(CRP), 습지보전프로그램(Wetlands Reserve Program: WRP), 환경품질유인프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S)을 포함함.	ECARP가 CCEP로 개칭됨. 보전우선지역 지정 권한은 CCEP와 EQIP에서는 삭제되었으나, CRP에서는 유지됨.
보전유보프로그램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CRP 면적의 상한은 3,640만에이커. 토지가 CR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 중 2개년을 경작하였으며 다음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유실지표(erodibility index: EI)8 이상 · 경작 습지 · 비경작 습지와 인접하거나 포위 · 고도로 효율적인 환경농법을 실천 · 토양유실 경험 · 연방 또는 주 CRP 보전우선지구에 위치 · 고수부지의 한계 초지 강독보전계획에 포함되었던 토지도 자격이 있음. 한발 비상시기에는 CRP 토지에서의 가축방목이 허용됨.	참여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 · 2001년 이전 6년중 4년 이상 경작된 농지 중 유실가능성이 높은 농지 ·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토지는 다시 참여할 자격 부여 · 2002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토지는 1년에 한하여 연장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할 때는 재배 중인 작물경작을 유지하여야 함. 토양유실 방지, 수질보전, 야생동물 서식지 제공 등 보전목적들이 균형있게 추구되어야 함.
보전유보강화프로그램	Conservation Reserve Enhancement Program(CREP)은 CRP와 연계되어 운영됨.	조항 유지.
습지보전프로그램 (Wetlands Reserve Program: WRP)	WRP의 상한은 107만 5천에이커임. 습지는 영구복원, 장기복원(30년 또는 주법에 의하여 허용된 최장기간), 복원없이 비용만 분담 협약 등 방식으로 복원됨. 습지를 삼등분하여 각 방식을 적용할 의무가 있음.	상한면적이 227만 5천에이커로 상향조정됨. 농무장관은 매년 가능한 한 25만에이커를 참여시켜야 함. 습지복원은 영구복원, 장기복원, 비용분담, 또는 상기 방식의 임의조합을 통해 복원 가능하며, 삼등분 의무는 폐지됨.
환경품질유인프로그램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7년 동안 13억달러 예산범위 내 추진 최소한 50%의 자금은 축산업과 관련된 환경분야에 지출토록 의무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계획과 목표를 명시한 보전계획(Conservation plan)을 작성하여야 함. 계약기간은 5 내지 10년임. 한 농장에 대한 연간 지급액 한도는 1만 달러이며, 복수연도 계약의 한도액은 5만달러임.	CCC 자금 투입을 의무화: - 2002 회계연도 4억달러, 2003 7억달러, 2004 10억달러, 2005 및 2006 각 12억달러, 2007 13억달러 축산분야 지출 의무 비율을 60%로 상향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계획과 목표를 명시한 보전계획(Conservation plan)을 작성하여야 할 의무 유지. 집중사용하는 축산농가는 영양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계약기간은 1 내지 10년임. 연간 지급액 한도는 없음. 한 농장에 대한 EQIP 지급총액은 2002 07 회계연도 기간 중 45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정 책 명	1996 2001년 정책	2002 농업법
보전안보 프로그램 (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CSP)	해당조항 없음.	CCC 자금 투입. 경작지와 초지를 포함한 모든 농경지를 대상으로 함. · 경지는 2002년 이전의 6년 중 4년간 경작 · CRP, WRP, 초지보전프로그램 참여 농지는 배제 · 농지에 직접 부속된 임야는 포함 · 가축분뇨처리지는 해당 사항 없음. 농민은 다음의 1-3단계 중에서 참여 가능. 높은 단계는 보전 노력이 큰 대신 지급단가도 높음. 1단계 : 최소한 1개소 농장 내 자원 중에서 1가지를 선정하고 5년간 계약. 2단계 : 모든 농장에 대하여 최소 1가지 자원을 선정하고 5 10년 계약 하며 갱신 가능. 3단계 : 모든 농장의 모든 자원을 대상으로 5 10년 계약하고 갱신 가능. 지급단가는 해당 작목 재배의 전국평균 임차료의 일정비율: 1단계 5%, 2단계 10%, 3단계 15%. 지급상한 : 1단계 연간 2만달러, 2단계 연간 3만5천달러, 3단계 연간 4만5천달러.
야생동물 서식지 유인 프로그램(Wildlife Habitat Incentive Pgm.)	CRP를 통해 1996 2002 회계연도 중 5 천만달러가 비용분담 원칙하에 지급됨.	CCC 의무지급액 : 2002 회계연도 15백 만달러, 2003 3천만달러, 2004 6천만달러, 2005 07 85천만달러.
농업경영지원프로그램 (Agr. Mgmt Assistance Pgm.)	2000 농업위험보호법(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에 의해 도입.	2002 07 회계연도 중 1천만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 지정된 15개 주 농민들이 보전 및 위험 감소 행위에 대하여 지원신청 가능.
농장보호프로그램 (Farm Protection Program)	CCC 자금 35백만달러로 17 34만에이커의 토지를 구매하여 환경적 보전목적으로 사용함. 별도로 10만 7천에이커를 보전하기 위하여 5천만달러가 사용됨.	다음과 같이 연차별 CCC 자금사용을 의무화함. 2002회계연도 5천만달러, 2003년 1억달러, 2004년 및 2005년 1억 25백만달러, 2006년 1억달러, 2007년 97백만달러. 면적한도는 폐지됨.
	토질이 상급이거나, 특수한 곳, 기타 생산성 높은 토양을 대상으로 함.	대상토지에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토지를 추가함. 농업경영에 관련이 있는 농자, 초지, 방목지, 산림이 포함됨을 명시함.

정 책 명	1996 2001년 정책	2002 농업법
초지보호 프로그램 (Grassland Protection Program)	유사 프로그램 없음.	2003 07년간 2억 54백만달러의 CCC자금 지원. 복원개량자연 초지와 방목지가 대상인데 참여한도는 2백만에이커임. 토지면적은 최소한 40에이커 넓이가 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이보다 적은 토지도 참여 가능함. 대상 초지는 10, 15, 20, 또는 30년 계약이 가능하고, 30년 또는 영구 환경부하경감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함. 지원자금의 60% 이상을 30년 계약 또는 영구경감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없음. 10, 15, 20년 계약 형태에 자금의 40% 이상을 사용할 수 없음.

3. 농산물 무역(Trade)

정 책 명	1996 2001년 정책	2002 농업법
수출신용보장프로그램 (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s)	단기 수출공급자 신용 보장. 농무장관은 GSM-103 중기 신용보증 해당국 명단을 참조하여 지원여부 결정. 2002년까지 GSM-102와 GSM-103 보증한도액을 55억달러로 설정. 각 프로그램에의 배분비율은 농무장관 재량. 90% 이상 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도 지원대상. 가공 및 고부가가치 식품 보증 비율은 법으로 결정: 1996년 및 97년 25%, 1998년 및 1999년 30%, 이후 35%. 최저비용 준수 의무가 전체 수출량을 감축시키는 경우 최저비용 상향 조정 가능.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을 2007년까지 연장. 농무장관과 무역대표는 WTO, OECD 등 대자간 협상의 장에서 농산물 수출 신용보장에 관한 협상 진전상황에 대하여 상원과 하원의 해당 상임위원회와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가져야 함. 가공 및 고부가가치 식품 보증 비율 35% 유지. 공급자 신용 프로그램의 상황 기간을 재정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180일에서 360일로 연장.
시장접근프로그램 (Market Access Program: MAP)	MAP 프로그램(과거 MPP)의 지급 상한은 1996 2002 회계연도 중 매년 9천만달러임. 참여자격은 농산물무역 관련 비영리 단체, 지역 협회, 또는 민간 기업임.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지원금 상한은 2002 회계연도 1억달러, 2003: 1억 1천만달러, 2004: 1억 25백만달러, 2005년 1억 4천만달러, 2006 및 2007: 2억달러 등임. 2001 회계연도 지원금 규모를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과거의 프로그램 참여여부, 신규시장 또는 기존 시장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을 결정함.
해외시장개척 프로그램 (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 FMD)	2002년까지 연장하고 매년 2,750만달러 지급.	3,450만달러 한도까지 CCC 자금 사용.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신규시장에 수출하는 데에 역점. 2001 회계연도 지원금 규모를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과거의 프로그램 참여여부, 신규시장 또는 기존 시장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을 결정함.

정 책 명	1996 2001년 정책	2002 농업법
신규시장 프로그램 (Emerging Markets Program)	1996 2002 회계연도 중 CCC 자금 10억 달러를 신용보증 또는 직접 지원. 미국 농산물 물류개선, 마케팅개선, 저장, 수입농산물 유통개선 시설에 자금 사용.	2007년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현 지원 수준 유지.
수출확대프로그램 (Export Enhancement Program: EEP)	EEP는 수출보조금을 주는 수출국과의 경쟁시장에 대한 지원임. 각 회계연도 별 EEP 한도는 다음과 같음: 1996: 3억 5천만달러, 1997: 2억 5천만달러, 1998: 5억달러, 1999: 5억 5천만달러, 2000: 5억 79백만달러, 2001 및 2002: 각 4억 78백만달러. 농무장관은 중간 부가가치농산물에 대하여 UR 기준연도인 1986-90년간의 수출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억달러의 지금을 사용할 수 있음.	2007년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현 지원 수준 유지. 불공정 무역관행의 정의를 확장하여 다음 사항 포함: · 정상적 무역거래와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는 국영무역기업의 무역거래 · 미국의 수출 점유율을 잠식하거나 시장을 왜곡시키는 보조금 · 부당한 무역제한 또는 생물학적 기술 등 신기술을 저해하는 표시제도 등 상거래 요구사항 · 부당한 SPS 관련 요구사항 · 기타 부당한 TBT · TRQ 운영 상 미국농산물 수입을 불공평하게 제한 하는 행위 · 미국과의 기존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식량농업부문 지원 (Food for Progress: FFP)	1985년 농업법에서 입법한 FFP를 연장함. 식량지원사업에 대한 행정, 판매,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2002년까지 지속. 프로그램에 정부간 기구 참여 허용. 대상국 모두에게 신용구매 허용.	프로그램을 2007년까지 연장함. 개도국에 대한 해당 품목 지원량은 40만톤이 하한임.

4. 영양(Nutrition)

정 책 명	1996 2001년 정책	2002 농업법
푸드스탬프(Food Stamp Program)	1996년 농업법에서는 2년간 연장을 승인하면서 동프로그램시행과 관련 식품도소매상에 대한 자격박탈 요건 추가	식품카드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을 2007년까지 연장 시행
긴급식량지원프로그램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동프로그램을 2002년까지 시행하며 식량구입 및 프로그램 관리에 각각 100만 달러 및 50만달러 계상	연간 식량구입비와 관리비를 각각 120만, 60만달러로 인상
지역식량안보기금 (Community Food Security Grants)	2002년까지 연간 250만달러의 자금을 확보하여 지역식량프로젝트에 지출	2002 2007년간 동예산을 5백만달러로 증액
농민시장영양프로그램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s)	부녀자, 영아 및 소아 프로그램(Woman, Infants, and Children: WIC)을 통해 농민시장에서 영세민들의 신선과채류구입 지원(1995년 1,050만달러예산 규모가 2002 회계연도에는 2,500만달러로 증가)	상품신용공사를 통해 1,500만달러의 추가 지원

5. 농업금융(Credit)

정 책 명	1996 2001년 정책	2002 농업법
농업사업국융자프로그램 (Farm Service Administration Loan Program)	융자를 받은 지 15년 이내에 신규 운전 자금 융자 금지 조항의 적용을 2002년 까지 유예 대부신청자는 최소한 3년 이상 농장 또 는 목장을 소유하거나 경영하여야 함. 2002년까지 운전자금 융자액 4억9,000 만달러에 대해 4%의 저율이자 적용.	유예기간을 2006년까지 연장 대부신청자는 최소한 3년 이상 농장 또 는 목장을 경영하여야 함. 4% 저율 혜택을 영구히 적용하되 7억 5,000만달러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규 영농참여자에게 배정
신규 영농참여자에 대한 융자(FSA Loans to Beginning Farmers)	신규 영농참여자는 해당 지역 경지소유 면적 중앙값의 25%까지만 소유할 수 있음 이러한 신규 농민들에게 10년간 4%의 저리 융자 제공	신규 영농참여자가 소유할 수 있는 경 지소유 상한선을 지역 중앙값의 30%로 확대하고 4%의 저리로 15년간 융자

6.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정 책 명	1996 2001년 정책	2002 농업법
농촌진흥프로그램 (Rural Community Advancement Program: RCAP)	1996년 농업법에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집중하고 주정부에서 부수적인 의사결정 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였음. 이 와 같은 새로운 농촌개발프로그램은 지역 시설, 수자원 및 쓰레기처리시설, 사업지 원등 3가지 분야에 대한 농무성 농촌개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되었음.	새로운 농촌개발프로그램은 지속시키되, 국가보존계정(national reserve account)를 포함한 계정구조(account structure)는 제외시킨다.
지역종합개발계획 (Comprehensive and Strategic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주단위의 전략계획개발, 기업유치계획, 농촌경제권파트너십 지침 등을 통한 소 규모 개발사업 강화	농촌전략투자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투 자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 음. 동위원회는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함. 상품신용공사가 이에 대한 재원 을 지원함. 복합지역계획프로그램을 통 하여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및 기구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
수자원 및 쓰레기처리 시설 지원(Water and Waste Facilities)	1996년 농업법에서 수자원 및 쓰레기 처리지원자금을 최고 5억 9,000만달러 까지 확대	5억 9,000만달러 상한이 철폐됨. 상품신용공사 자금 3억 6,000만달러를 일회성 수자원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지원
통신 (Telecommunicating Programs)	원격진료 및 영상교육프로그램의 연장 및 개선. 이를 위해 1억달러의 자금 지원	원격진료 및 영상교육프로그램 계속 시행
미국농촌기금(Fund for Rural America)	농업연구 및 농촌개발을 보강하기 위하 여 연간 1억달러에 달하는 재원 마련	추가 연장하지는 않지만 기 실시중인 사업 은 완결때까지 추진

7. 연구, 지도, 교육

정 책 명	1996 2001년 정책	2002 농업법
연구·지도사업 자금 지원 연방 및 주정부 농업 시험장에 대한 자금 지원	농업연구에 대해 연간 8억 5,000만달러 배정 3억 1,000만달러를 주정부 농업시험장에 배정 4억 6,000만달러를 지도사업에 배정 2억달러를 식품 및 영양교육프로그램에 배정 5억달러는 연구 프로젝트에 배정	당초 조항이 ㄱ) 2007년까지 연장되고, ㄴ) 소요액수에 대한 조항이 '해당 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액수'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수정 농업연구에 대한 의회예산을 앞으로 5년간 두 배로 늘림.
미래 농업 및 식품시스템에 대한 지침	1998년 농업연구, 교육, 지도사업개혁법에 미래농업식품시스템조항을 신설하고 1998년부터 2002년 회계연도기간중 연간 1억 2,0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1998 2002)	동 예산을 2004년에는 1억 2,000만달러, 2005년에는 1억 4,000만달러, 2006년에는 1억 6,000만달러, 2007년부터는 2억달러씩 배정
중점연구분야(High-priority Research) 지원	1998년 농업연구지도개혁법에 의거 미래식품생산, 환경자연자원관리, 농업소득 등 중요한 분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그밖에도 식품안전성, 농업계농작성, 자연자원관리, 농업생명공학, 대체적인 생산 등에 대한 연구 자금 배정	중요한 분야에 농촌, 경제적, 기업적 지역개발 분야 추가
연구관리 메틸브로마이드 (Methyl bromide) 연구	1998년 농업연구, 교육, 지도사업개혁법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중점 연구, 지도 분야로 선정하고, - 메틸브로마이드의 화학적 및 비화학적 대체 용도 개발 및 발생억제 전략, 식재전 및 수확후 이용방법 개발 - 농민들에게 연구결과의 전파 등의 사업 전개 의회센스에서도 농무장관이 메틸브로마이드의 상업적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식재전 및 수확후 조건 연구에 대하여 농업연구청의 상당부분의 자금을 할애해야 한다고 규정	농무장관에게 해충이나 해로운 잡초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정부, 지방, 또는 부족 당국이 요구하는 메틸브로마이드관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 농무성은 90일 이내에 신청을 검토하여 최종결정을 내려야 함.
해충 및 잡초 손해 보상	2002년 식물보호법에는 비농무부공무원들이 식물 해충 및 잡초제거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 등과 같이 동법의 이행과 관련된 농무부의 조치들을 검토할 권한 부여	비농무부직원이 검토할 시한을 60일 이내로 제한
생물테러 및 생물안전	관련 사항 없음.	2002 2007년까지 미국 농업 및 식품을 생화학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농업연구, 교육, 지도사업에 예산 할당 위험도분석, 발생반응, 포착 및 방지 대책과 관련된 연구, 훈련과 같은 미국 생물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파트너십 강조

정 책 명	1996 2001년 정책	2002 농업법
생물기술(Biotechnology) 위험평가연구	관련 사항 없음	유전자 조작 동식물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 분석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 되 중점지원분야는 - 유전자 조작 동식물의 물리적, 생물학 적 위험 관리 - 유전자 조작 동식물의 확산 감시법 - 유전자 조작 동식물과 야생농산물 조 직간 발생할 수 있는 종의 이전 특성, 비율, 방법 연구 - 유전자 조작이 생산시스템에 미치는 관련 영향
유기농업 공개경쟁 프로젝트 및 중점 연구 분야 (Competitive Grants and Research Priorities)	1998년 농업연구, 교육, 지도사업개혁법에 유기농산물의 연구 및 지도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시	연간 3백만달러를 추가 지원하여 유기 농산물의 유전적인 정립, 유기농에게 적 합한 대중적인 품종개발, 유기농 발전을 저해하는 유통 및 정책적인 제한 구명, 생산 및 사회경제적인 조건 등을 선진 적인 유기농 연구 실시
농촌개발 신규영농인 및 축산인 교육	관련 사항 없음	과거 최소한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신규 영농인 및 축산인에 대한 교육, 훈련, 기술 지원 신규영농인 및 축산인에 대한 지역 차원 의 훈련 및 교육, 기술지원활동에 대한 3 년만기의 공동자금부담방식의 융자 지원